

#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2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능동적 대응을 위해 과 명칭 변경 및 기능·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수요의 체계적·집중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과 명칭변경(안 제7조제1항)
  -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, 지역경제과, 청년일자리과, 문화정책과를 둠

## 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## 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4. 12. 27.~2025. 1. 2.(7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## 9. 관련부서: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

##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시 행정의 감사”를 “감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집단·다수”를 “인권보호 및 집단·다수”로 한다.

### 1. 법제 및 소송 등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

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조정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기업지원과, 일자리경제과”를 “투자유치과, 지역경제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기업지원과장” 을 “투자유치과장” 으로 하고,  
 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기업지원과장” 을 “투자유치과장” 으로 한다.

부서명		기획조정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조정과장 최 현 주
	팀장 직위·성명	조직성과팀장 이 소 현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혜 진 (790-5543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좌기관)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③ 법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신 설&gt;</p> <p>1. <u>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     2. <u>집단·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     3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4. <u>법제소송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5조의2(기획재정국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기획조정국장은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제7조(경제문화국) ① 경제문화국에 <u>기업지원과, 일자리경제과, 청년일자리과, 문화정책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보좌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제 및 소송 등 법무행정</u>에 <u>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     2. <u>감사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4. <u>인권보호 및 집단·다수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기획재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기획재정국장은</u> ----- -----.</p> <p>제7조(경제문화국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 <u>투자유치과, 지역경제과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해당없음

## 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 - ※ 공무원 총정원 1,103명으로 변동없음

## 4. 작성자: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장(최현주)